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뢰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법보좌관 이상호

건명 : 유민준 외 4명 소유물건  
(2024타경21658)

번호 : 삼창 제 P20242-11089 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 (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삼창감정평가법인  
Samchang Appraisal Co., Ltd.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86,  
507호(불당동, 마블러스스타워)

TEL. (041)567-1400 / FAX. (041)568-7600



##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상원 (인)

(주) 삼창 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장 김기선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사천이백구십팔만일천원정 (₩42,981,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법보좌관 이상호	감정평가목적	경매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유민준 외 4명 (2024타경21658)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4. 11. 29	2024.11.29	2024. 12. 1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 (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21	토지	121	-	40,656,000
제시외건물	(23.25)	제시외건물	23.25	-	2,325,000	
합계					₩42,981,000	
	이	하	여	백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대상물건 개요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소재 '예산읍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가.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 나. 감정평가조건

-

###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 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 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절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각각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그 밖의 사항

일련번호 1) 토지 위치상에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의 평가는 구조·용재·시공의 정도·관리 및 이용상태·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면적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여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음. 제시외건물로 인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받을 경우의 제한가격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의 비교에 병기하였으니 귀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5. 대상물건의 확정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2024년)	비고
1)	예산리 396-3	121	121	대	2종 일주	단독주택	세로(불)	사다리평지	201,600	-
합계	-	121	121	-	-	-	-	-	-	-

### 6. 기준시점 등

가.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완료일을 기준하여 2024년 11월 29일로 함.

나. 실지조사(2024년 11월 29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지가수준을 확인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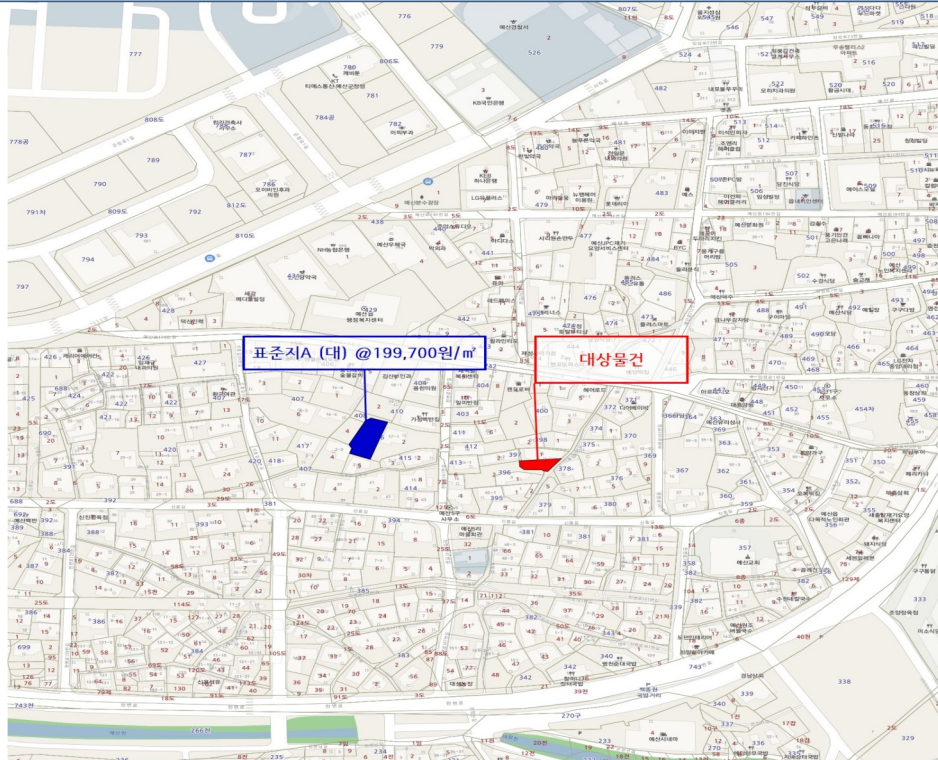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가. 비교표준지 선정(공시기준일: 2024.01.01)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주위환경,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표준지 A	예산리 416-3	311	대	2종 일주	단독 주택	세로 (불)	사다리 평 지	199,700

위 치 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나.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하여 최종 발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표준지 A	충청남도 예산군 '주거지역'	2024.01.01~2024.11.29	0.891	1.00891	2024년 10월 연장적용

### 다.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일련번호 1)/표준지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표준지A)	비 고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 2004.05.14) 등에 근거하여 인근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수준과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전례를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가) 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감정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격차율
①	예산리 000-00	대	112	2종 일주	경매	2023.05.30	338,000	186,700	1.81
②	예산리 000-00	대	93	2종 일주	공매	2022.03.14	328,000	210,500	1.56
③	예산리 000-0	대	70	2종 일주	공매	2023.11.22	373,000	206,900	1.80

나)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거래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	예산리 000-00	대	2종 일주	109	38,000,000 (건물포함)	약 341,000	2022.10.04	217,1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일반목구조(사용승인일 : 1978.10.30), 면적 : 48.52㎡ ■ 토지 추정단가 : $\{[38,000,000\text{원} - (750,000\text{원}/\text{㎡} \times 1/40(\text{관찰감가}) \times 48.52\text{㎡})] / 109\text{㎡}\} \approx 341,000\text{원}/\text{㎡}$							
㉡	예산리 000-00	대	2종 일주	128	42,000,000	약 328,000	2022.04.25	201,100
㉢	예산리 000-00	대	2종 일주	162	59,000,000	약 364,198	2022.11.30	211,2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인근지역 지가수준

#### 가) 지가수준

용도지역	용도	도로조건	지가수준	조사처
2종일주	단독주택	세로 (불)	320,000~350,000원/㎡	인근 부동산

###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 가) 산정방법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기준시점의 표준지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비교표준지의 기준시점단가와 비교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음.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 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1) 비교사례의 선정

선정 비교사례	감정평가전례 ②
비교사례 선정의견	상기의 인근 지역 내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효용성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위의 사례를 선정하였음.

##### (2) 시점수정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비교사례 ②	충청남도 예산군 '주거지역'	2022.03.14~2024.11.29	2.759	1.02759	2024년 10월 연장적용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4)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표준지A/비교사례②]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표준지A /비교사례②)	비 고
가 조 건	가로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구분	비교사례	비교사례 단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단가(원/㎡)
표준지 A	②	328,000	1.02759	1.000	1.000	337,050

(6) 격차율산정

$$\frac{\text{비교사례② 기준 비교표준지단가}}{\text{표준지공시지가A} \times \text{시점수정}} = \frac{337,050}{199,700 \times 1.00891} = 201,479 \approx 1.673$$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표준지	결정 보정치
인근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경매낙찰가율 및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A	1.67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표준지 기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A	199,700	1.00891	1.000	1.000	1.67	336,470	336,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 가. 거래사례 선정

##### 1) 선정기준

선정 비교사례	거래사례 ㉠
비교사례 선정의견	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 가능한 거래사례로서 인근지역 내의 실거래 중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위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 2)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거래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	예산리 000-00	대	2종 일주	109	38,000,000 (건물포함)	약 341,000	2022.10.04	217,100
비 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일반목구조(사용승인일 : 1978.10.30), 면적 : 48.52㎡ ■ 토지 추정단가 : $[(38,000,000\text{원} - (750,000\text{원}/\text{㎡} \times 1/40(\text{관찰감가}) \times 48.52\text{㎡})] / 109\text{㎡} \approx 341,000\text{원}/\text{㎡}$							

#### 나. 사정보정

결정의견	선정된 비교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사정보정 비교치	1.000

#### 다. 시점수정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비교사례 ㉠	충청남도 예산군 '주거지역'	2022.10.04~2024.11.29	1.371	1.01371	2024년 10월 연장적용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일련번호 1)/비교사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 /비교사례㉠)	비 고
가 조 건	가로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번호	비교사례 기호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	341,000	1.000	1.01371	1.000	1.000	345,675	346,000	-

### 3.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가. 시산가액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결정단가 (원/㎡)
1)	336,000	346,000	336,000

나.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1)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가 상호간에 유사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96-3	121	121	336,000	40,656,000	-
<b>합 계</b>		<b>121</b>	<b>121</b>	-	<b>40,656,000</b>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Ⅲ.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정에 적용할 가액으로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및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40,656,000	상세내역은 명세표 참조
제시외건물	2,325,000	
합 계	42,981,000	-

끝.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원/㎡)	금액(원)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96-3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121	121	336,000	40,656,000	제시외건물로 제한받는단가 @316,000
ㄱ)	[제시외건물] 동소	396-3 위지상	창고등	조적조 판별지붕 단층	(23.25)	23.25	100,000	2,325,000	관찰감가
	<b>합계</b>			<b>이 하</b>		<b>여</b>	<b>백</b>	<b>₩42,981,000</b>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소재 '예산읍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2.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도로와 접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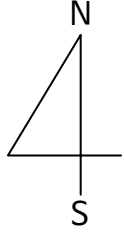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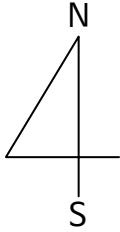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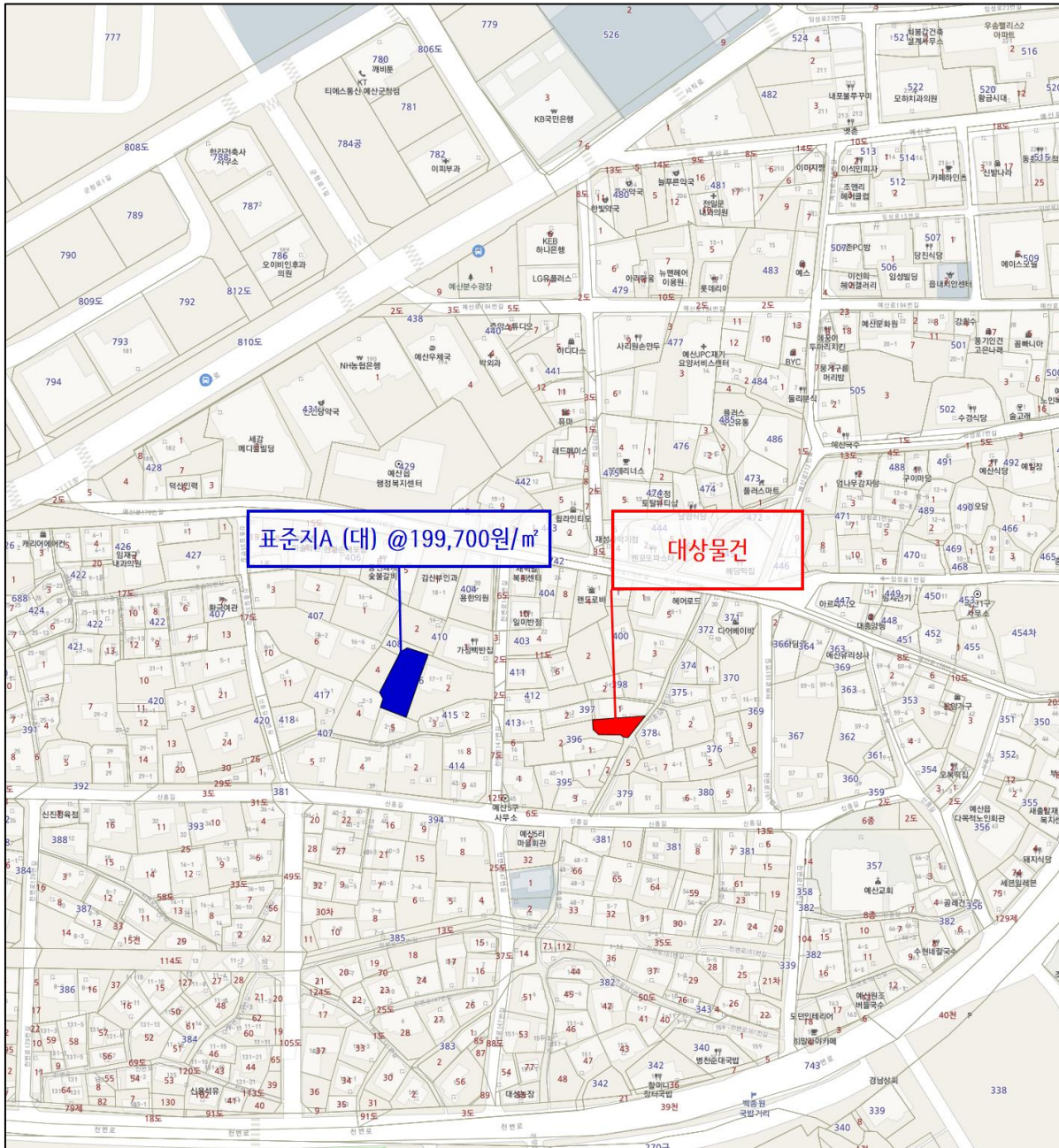


#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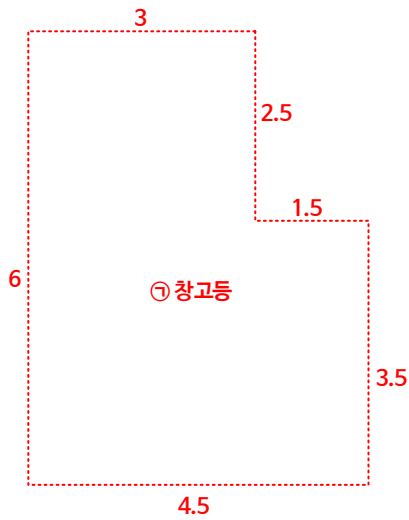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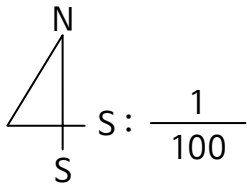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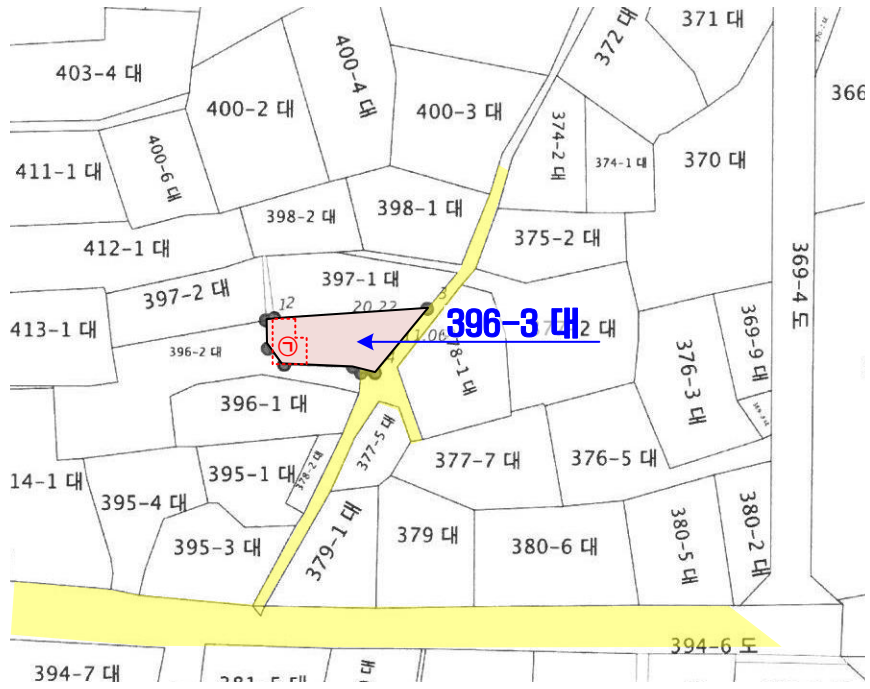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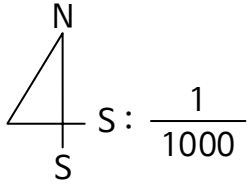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96-3



# 지적 및 건물개황도



**제시외건물**  
㉠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 약 23.25㎡

## 사 진 용 지



[ 본건전경(남서측에서 촬영) ]



[ 본건전경(북동측에서 촬영) ]

# 사 진 용 지



[ 제시외건물 ㄱ ) ]



# (주) 삼창감정평가법인

수 신 :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 사법보좌관 이상호  
(경 유)

참 조 : 경매2계장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1. 항상 우리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관련문서 2024. 11. 28자 귀 『2024타경21658』호로 의뢰하신 『유민준 외 4명 소유물건 (2024타경21658)』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회보합니다.

불 임 : 1. 감 정 평 가 서 1 부  
2. 수 수 료 청 구 서 1 부 끝.

## (주) 삼창감정평가법인 충 남 지 사 장

시 행 삼창 제 P20242-11089 호 (2024. 12. 10)

우)3115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86, 507호(불당동, 마블러스스타워) 전화 (041)567-1400 FAX (041)568-7600

(세금계산서) 전화 (041)567-1400 FAX (041)-568-7600 E-mail : samchang14@wehago.com <http://www.isamchang.com>

## 수수료 청구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법보좌관 이상호 귀하

삼창 제 P20242-11089 호

금사십칠만팔백원정

₩470,800

의뢰문서번호 : 2024타경21658

의뢰일자 : 2024.11.28

건명 : 유민준 외 4명 소유물건(2024타경21658)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 평가수수료	290,000	
나. 여비	122,400	【공부발급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1,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1,000원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2,000	
기타 실비	4,000	
특별용역비		
소계	138,400	
공급가액	428,000	※ 1,000원 미만 결사
부가가치세	42,800	
합계	470,800	
기납부착수금		
정산청구액	470,800	

위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하오니 기납부착수금을 뺀 금액을 아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처 ※ 송금시 무통장 입금용지의 입금 의뢰인란에 감정서번호 "P20242-11089호" 기재 바람.

※ 사업자등록번호(공급자) : 3128549918

하나은행 두정동지점

736-910005-40705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주) 삼창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장